

# 예원예술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(Y-TOPIK) 운영 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① 본교 입학에 위해 자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(Y-TOPIK)(이하 “자체시험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자체시험의 목적은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미 취득 학생의 본교 한국어 자체시험 기회를 부여하여 합격자에게 본교 학부, 대학원 입학지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. 단, 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고시한 언어능력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이나 졸업 전에 언어능력기준(한국어능력시험)을 충족해야 한다.

## 제2장 시험의 내용

**제2조(시험 종류 및 구성)** ① 시험 종류는 읽기, 쓰기로 구분한다.

② 읽기, 쓰기 50문항으로 구성되며, 시험시간은 읽기, 쓰기 총 60분으로 한다.

**제3조(시험의 합격 등급 결정)** ① 시험의 합격 등급은 읽기, 쓰기로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

② 시험 점수별 등급은 3급을 60점 이상, 4급을 70점 이상, 5급을 80점 이상, 6급을 90점 이상으로 한다.

## 제3장 시험의 시행

**제4조(시험 실시 및 공고)** ① 시험은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, 다만 필요한 경우 실시 횟수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험 일정을 포함한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전에 공지 한다.

③ 해외에서 응시를 희망할 경우 대면 시험이나 IBT(인터넷 기반 시험)로 실시한다.

④ 시험 실시에 필요한 응시료를 응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⑤ 천재지변이나 유행병과 같이 응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제교류교육원장이 정한 별도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**제5조(응시 자격)** ① 한국어능력시험(TOPIK)3급 이상 미취득자

**제6조(시험 접수)** ① 한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하려는 지원자는 신청서를 지정한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 신청으로 접수하여야 하며, 홈페이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.

② 한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하려는 지원자가 접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접수 기간 동안 가능하며, 특히 시험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기간 동안 해당 시험장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.

③ 한국어능력 시험에 응시 접수 시 규정된 규격의 사진을 등록·제출해야 한다.

④ 한국어능력 시험 응시료가 발생할 경우 지정된 계좌에 응시자의 이름으로 입금해야 한다.

**제7조(응시 가능 신분증)** ① 한국어능력 시험 응시자는 예원예술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장이 정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**제8조(입실 및 퇴실)** ① 응시자는 안내된 시간 내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, 입실 시간 이후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. 단, 자연재해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원예술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장 결정 하에 입실 시간과 장소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임의로 퇴실할 수 없다. 단,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실할 경우 중도퇴실자 서약서를 작성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중도퇴실자의

성적은 무효 처리된다.

**제9조(성적 발표)** ① 성적은 공지된 발표일시에 개별통지 한다.

- ② 성적 발표일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.
- ③ 시험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6개월 유효하다.

**제10조(성적증명서 발급)** ① 성적증명서는 예원예술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을 통해서 발급하며, 우편, FAX 및 E-mail 등으로 발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성적증명서 발급과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.

**제11조(부정행위 처리 대상 및 응시 자격 제한)** ① 다음 1~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해당 시험 성적은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.

1.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

- 가.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
- 나.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다.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
- 라. 제출한 전자·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

2.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자격 제한

- 가.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
- 나.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로 하는 행위
- 다. 전자·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
- 라. 부정확한 휴대물을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
- 마. 다른 응시자와 답안이나 쪽지 교환 또는 손동작·소리 등의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
- 바.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
- 사. 시험 문제의 유출·배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
- 아.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유출·배포하는 행위
- 자.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·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차. 성적증명서를 위·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

3.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4년간 응시 자격 제한

- 가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한 행위

- ② 부정행위자의 성적 무효는 국제교류교육원장이 확정한다.
- ③ 성적 발표 후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 과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되면 해당 성적과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, 응시 자격 제한 및 사후 조치는 제1항에 따른다.
- ④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원예술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**제4장 시험의 관리**

**제12조(시험위원)** ① 대학의 교직원이나 외부에서 자체시험의 출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시험 출제 및 채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[별표 1]과 같다.

[별표1] 한국어능력자체시험 출제 및 채점 수당 편성 및 집행 기준(제27조 관련)

구 분		금 액	비 고
출제 수당		50,000원 / 세트당	문항수(25문항)×2,000원(문항당)
채점 수당	1 ~ 30명	50,000원 / 회당	
	31 ~ 60명	100,000원 / 회당	
	61명 ~	150,000원 / 회당	

부 칙(2021. 7. 00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00일부터 시행한다.